■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 <개정 2020. 5. 27.>

서 약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____)은 서약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010- 전자우편	
서약 내용	일 반 공	청년[]	1.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의 내국인이며 무주택자임 2.미혼 3.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4.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자임. (단,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급	급			
	신 청 자	예비 신혼부부[]	3.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임.(예비신혼부부는 현재 각각 무주택자임.) 4.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자임. (단,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빠 펼 공	청년[]	1.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의 내국인이며 무주택자임 2.미혼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4. 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자임(단,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제외) 5. 본인 자산 가액 2억9,900만원 이하임.		
	□ 1.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39세 이하의 내국인이며 무주택자임 2.신혼부부는 혼인(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연할 수 있음.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함. 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나.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임. 4. 자동차 미소유, 미운행자임 (단,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 기동,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임.		비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5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 신청이 위 작성 내용과 동일함을 서약합니다. 향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약자

신길역 준타워(청년주택) 귀하

유의사항

-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9제4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합니다.
- 2. 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 자 전원에 대해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에서 임차인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서약 내용을 임차인의 요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합니다.